

# 남원초등학교 학부모회 운영 규정

-2021.-04.-07-개정- 2023. 03. 00 개정

## 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남원초등학교 학부모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학부모회 운영을 도모하고,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지역사회와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조(정의)

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'학부모'란 부모, 후견인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호·감독자 등의 지위에서 취학하여야 할 아동 또는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.
2. '학부모회'란 전체학부모를 구성원으로 두고 있는 기구를 말한다.
3. '총회'란 학부모 전체가 참여하여 학부모회의 최고 의사를 결정하는 회의체로서 본 규정 제2조 1항에 따른 학부모 전체회의를 말한다.

## 제3조(학부모회의 설치)

본교에 학부모회를 두고, 명칭은 '남원초등학교 학부모회'로 한다.

## 제4조(기능)

학부모회는 학교교육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
1.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 제시 및 학교 교육 모니터링
2.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 교육 활동참여·지원
3. 학부모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
4.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
5. 학교, 마을도서관 독서도우미 활동
6. 학교 주변 유해환경 정화 등 각종 캠페인 활동 참여
7. 녹색어머니회 봉사활동
8. 기타 학부모회에서 자체 계획을 세운 활동

### 제5조(회원)

회원의 자격은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로 한다.

### 제6조(임원 등의 구성)

1. 학부모회의 임원은 회장 1명, 부회장 1명, 총무 1명으로 한다.
2. 학부모회 회장은 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.  
**(단 제4조 기능에 준하는 학부모회 활동을 2년 이상한 자만 입후보 가능함)**
- 3. 회장 후보가 한 명일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회장에 임명한다.**
4. 부회장과 총무는 직접 선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장이 지명할 수 있다.

### 제7조(임원의 임기·직무·자격)

1. 임원의 임기는 다음 학부모회에서 임원이 선출되기 전까지로 한
2. 학부모회의 회장은 ~~한-번-연임할-수-있다.~~**한 번 연임할 수 있고, 연임을 결정할 경우 자동 회장에 임명한다.**
3. 회장은 학부모회를 대표하고, 학부모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4.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임무를 대신한다.
5. 총무는 학부모회의 업무 및 회계를 담당한다.

### 제8조(학부모회의 조직)

1. 학부모회 산하에 학년별 학부모회와 학급별 학부모회, 학부모 동아리, 녹색어머니회 등을 둘 수 있다.
2. ①항의 조직별 회장은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선출한다.

### 제9조(총회)

1. 학부모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3월에 개최하며,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.
2. 정기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.
3.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또는 해당학교 학부모회 회원의 10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.
4. 회장은 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총회소집 의제 및 일시, 장소를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.
5. 총회는 회원의 10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6. 회장은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나 SNS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

#### 제10조(총회의 의결사항)

1.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  - 가. 학부모회 활동계획 수립
  - 나. 학부모회 규정의 제·개정 사항
  - 다. 학교 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
  - 라. 그밖에 회장이 학부모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2. 「초·중등교육법시행령」 제59조에 따라 총회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.
3. 학부모회 의결사항 중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2조에 해당하는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학교장에게 전달할 수 있다.

#### 제11조(재정지원 등)

1. 학교의 장은 학부모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2. 학부모 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

#### 제12조(준용)

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관련 법규나 규정, 지침, 조례 등을 준용한다.

#### 제13조(개정)

1. ‘남원초등학교 학부모회 운영규정’은 회원의 10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.
2. 개정 시에는 관련 법규나 규정, 지침, 조례 등에 따른다.

#### 부 칙

제1조 이 규정은 ~~2021년 04월 07일 부타 시행~~ **2023년 03월 00일부터 시행**한다.